

영춘 사족의 동향과 향약 실시의 성격

김의환* · 이근호**

-
- I. 머리말
 - II. 영춘 사족의 입향과 정착과정
 - III. 조선후기 향약 실시의 배경과 성격
 - 1. 조선시대 향약 실시의 배경
 - 2. 영춘 향약의 내용과 성격
 - IV. 맺는 말
-

I. 머리말

永春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이다. 조선시대에 단양지역은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들의 삶은 가난하다.”라고 하였으나, 경치가 수려하고 영남과 가까워 많은 儒者들과 지방관이 이곳을 거쳐 가며 유교를 가르쳤기 때문에 독자적인 儒風을 가진 곳이었다.

영춘은 단양 가운데에서도 더 궁벽한 지역으로서 조선시대에는 종6품의 현감이 파견되던 곳이었다. 영춘은 예전에 乙阿甘·子春 등으로 불렸으며, 春城이라는 별호를 가지고 있었다. 동쪽으로는 경상도 풍기,

남쪽으로는 충청도 단양, 서쪽으로는 충청도 제천, 북쪽으로는 강원도 영월과 인접하였다. 지형은 태백산맥이 흘러와 소백산맥이 갈라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세가 높고 험한 곳이다.

영춘 현감이던 洪樂安은 조정에 올린 상소에서 영춘현의 상황을 설명하여, “많은 산 가운데 있어 궁벽하고, 넓은 들판도 없으며, 10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이 없다.”고 하였다.¹⁾ 홍낙안의 표현대로라면 그야말로 궁벽한 지역이다.

이러한 사실은 1868년에 향교 중수 기록인 <永春縣學重修記>에서도 “영춘의 고을이 거친 산속에 끼어 있어 왕의 교화가 스며드는 것이 京畿 지역과 다르고 또 선현의 유풍이 드물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²⁾ 그러나 상대적으로 산수는 勝景이었고, 단양·제천·청풍과 함께 ‘四郡’으로 통칭되었다.

영춘현의 토성은 趙·尹·鄭·秦씨가 있었고,³⁾ 조선시대 중앙집권화 정책에 따라 성씨의 부침이 있었다. 그리하여 일부 성씨는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성씨들이 이거하며 사족 사회를 형성하였다. 이들 영춘 지역에 터를 잡아 세거하던 사족들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교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향약을 시행하며 향촌 주도권을 장악해갔다.

이 글은 영춘 지역 사족들이 19세기 전반기에 시행되었던 영춘 향약의 내용을 살피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먼저 영춘 사족의 입향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이 조선 후기에 향약을 실시한 배경은 무엇이며, 그 내용과 성격은 어떠하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 지역 사족들의 동향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 충북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임연구원

1) 『承政院日記』 제1831책, 순조 즉위년 12월 15일(계해). 영춘의 경제 사정은 다른 충북의 작은 군현과 비슷하게 열악하였다(정경임, 2011, 『光武量案을 통해 본 忠北 小邑民의 경제상황』, 충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 <永春縣學重修記>(1868).

3) 『世宗實錄地理誌』 권149, 충청도 영춘현 ;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 충청도 영춘현.

II. 영춘 사족의 입향과 정착과정

조선시대 영춘에는 다양한 성씨가 거주하였다. 조선전기 영춘현의 토성은 趙·尹·鄭·秦씨였고, 사라진 성씨는 石씨였으며, 다른 곳으로 이주한 성씨는 李씨였다. 『輿地圖書』에도 이들의 성씨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성씨들은 지역의 토성으로 자리 잡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치적 부침과 전란 및 혼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이 입향하여 지역 사회에 정착하면서 동족마을을 형성하고 세거하였다. 동족마을은 17세기 이후 주자가례의 보급과 예학의 발달, 상속제도의 변화, 종법적 가족제도의 수용 등 여러 사회적 변화로 형성되고 정착하였다.⁴⁾ 영춘의 동족마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영춘의 성씨와 동족마을

4) 정진영, 1991, 「조선후기 동성마을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 21, 국사편찬위원회.

	성 씨	동족마을	입향시기	입향조	인물
1	인동 장씨	어상천면 연곡리	성종대	張義孫	張東武
		단양읍 별곡리		張孟翼	張忠植
2	강릉유씨	영춘면 유암리	성종대	劉仁夫	劉吉順
3	양천허씨	영춘면 여천리	중종대	許天迪	許□
4	영월엄씨	영춘면 사이곡리	중종대	嚴岡壽	嚴在龍
5	강릉김씨	영춘면 용진리	명종대	金論東	金尙昌
6	창녕조씨	영춘면 동대리	선조대	曹世器	曹時榮
7	한양조씨	가곡면 덕천리	인조대	趙懋	趙鍾文
8	파평윤씨	영춘면 용진리	인조대	尹彙義	尹行弼
9	삼척김씨	영춘면 의풍리	인조대	金斗山	金順立
10	전주이씨	가곡면 사평리	효종-현종	李汝標	李陽貞

조선시대 영춘에 자리 잡은 성씨들은 대체로 조선 전기와 중기에 입향하였다. 인동 장씨와 강릉 유씨는 성종대, 양천 허씨와 영월 엄씨는 중종대, 강릉 김씨는 명종대, 창녕 조씨는 선조대, 한양 조씨와 파평 윤씨 및 삼척 김씨는 인조대, 그리고 전주 이씨는 효종~현종대에 각각 영춘에 입향하였다.

이들 가운데 조선 후기에 영춘 향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씨를 중심으로 입향과 정착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인동 장씨의 증시조 張桂는 고려 후기에 예문관 대제학을 지냈다. 이 성씨는 6세 張安良과 張安式의 아들대에 분파되어, 장안량의 장남 張善孫은 동정공파, 張敬孫은 주부공파, 張末孫은 안양공파의 파조가 되었고, 장안식의 아들인 張以和는 부사공파, 張義孫은 판관공파의 파조가 되었다.

특히 장말손은 세종 5년(1459) 문과에 급제하여 남이와 함께 이시에 난을 평정하여 적개공신이 되어 예조참판을 지냈고, 그의 동생 張順孫 역시 문과에 급제하여 『성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갑자사화 때 유배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풀려나 영의정이 되었다.

이 가운데 영춘에 입향한 가계는 판관공파이다. 장계는 인동에 자리

잡았고, 후손들은 죽산과 광주 등지에 거주하다가 세조 때를 전후하여 서울에 이주하였다. 판관공과는 7세 張義孫이 성종 때 영춘에 입향하였다.

이 성씨는 창녕 조씨·문화 유씨·청풍 김씨 등과 혼인하면서 당시 지녀 균분상속의 관행 속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 후손들이 관직에 진출하여 지역에서 위상을 차지하였다.⁵⁾ 인동 장씨는 어상 친면 연곡리와 단양읍 별곡리에 동족마을을 형성하였다.

한말에 張忠植(1836~1901)과 張益煥 부자는 의병활동으로 주목받았다. 장충식은 민겸호의 문객으로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동학농민전쟁 때 민보군으로 활동하였고, 아들과 함께 3부자가 을미의병에 참여하였다. 그는 유인석의 호좌의진에서 선비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사객 겸 대장의 참모로 활동하였다.⁶⁾

이 가문의 張錫岐는 광무양안에서 영춘의 1결 이상 소유자 105명 가운데 11위의 지주였다. 그는 군내면 상리에 12칸의 기와집과 10칸의 초가에 살면서 모두 4결 63부 5속을 소유하고 있었다.⁷⁾

강릉 유씨의 시조는 고려 문종 때 송에서 건너온 劉釜이다. 고려 말 9세 유환은 거창에 은거하였고, 12세 유창은 개국공신으로 초대 대사성을 지냈다. 영춘에 자리 잡은 계열은 판서공과이다. 11세 劉天鳳의 아들은 각각 옥성군·이조판서·대사간·병조판서를 지냈고, 그 가운데 4남 劉治의 아들인 13세 劉仁夫가 성종 때 삼척으로부터 영춘에 입향하였다. 그는 세조가 강릉에서 별시를 설행할 때 무과에 급제하여 수군첨절제사를 역임하였다.⁸⁾

이 가문은 유인부 이후 무반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며, 영춘면 유암리에 동족마을을 형성하였다. 순조 25년(1825) 영춘 향약 실시 때 75명

5) 인동장씨전국총회, 1998, 『인동장씨족보』. 張東武(1797~1871)는 현종 6년(1840) 영춘에서 진사가 되었다.

6) 구완회, 2004, 「한말 을미의병기 장충식의 생애와 의병노선」, 『조선사연구』 14.

7) 『충청북도영춘군양안』.

8) 유씨대동보편찬위원회, 1975, 『유씨대동보』.

이 참여한 양천 허씨 다음으로 劉命應(1767~1833)과 劉宅周 등 47명의 많은 인물이 참여하였고⁹⁾, 광무양안에는 劉在元 등 5명이 1결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양천 허씨는 강릉 유씨와 함께 '許劉兩姓'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춘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시조는 許宣文이며, 그의 손자 때부터 7대에 걸쳐 계속 과거에 급제하여 유력한 가문이 되었다. 특히 10세 許珽의 아들 5형제가 두각을 나타내어, 장남 許程이 동주사공파의 파조가 되는 등 모두 파조가 되었다.¹⁰⁾

이들은 처음에는 양천과 장단 및 개성 일대에 살다가 16세 許扉 계열은 개성과 장단 및 연천 등지에 살았고, 일부는 19세 許礎 이후 충주시 소태면 청룡에 세거하였다.¹¹⁾

영춘에 입향한 계열은 동주사공파이다. 단양우씨와 혼인한 18세 許天迪은 공조참판을 지냈고, 종종 때 아들의 처가 단양 우씨가 있는 영춘에 자리 잡은 이후 가곡면 여천리와 영춘면 만종리에 동족마을을 형성하였다.

양천 허씨는 영춘 향약 때 강릉 유씨와 함께 이를 주도하여 전체 223명 가운데 1/3이 넘는 75명이 참여하였다. 처음 재장 許萊老, 도유사 許堯一, 별감 許允一이 주도하였고, 허유조가 도약정, 허요일이 부정을 맡아 운영하였다. 광무양안에는 2결 16부 1속을 소유한 여천리의 許敬을 비롯하여 모두 10명이 1결 이상을 소유하였다. 그리고 許□(1832~1906)과 그의 아들 許憲(1862~1891)은 효로써 정려를 받았고¹²⁾, 영춘향교의 직원과 전교를 많이 배출하였다.

영월 엄씨의 시조는 嚴林義인데, 그의 아들 대에 분파되었다. 11세 嚴有溫은 개국공신이었고, 12세 嚴興道는 영월의 호장으로서 단종의 시신

9) 『鄉約儒籍』. 유명응은 <구향교중창기>와 <향교이건기>(1811) 등을 썼다.

10) 양천허씨세보편찬위원회, 1960, 『양천허씨세보』.

11) 許僑은 임진왜란 때 순절한 金梯甲의 사위였고, 許積은 남인의 영수로서 영의정을 지냈다(양천허씨한천공파세보편찬위원회, 1990, 『양천허씨공파세보』).

12) 허증과 허현의 효자각은 어상천면 대전 2리(황학동)에 나란하게 세워져 있다.

을 수습하여 숙종 때 단종과 사육신이 복권되면서 후세에 알려졌다.¹³⁾ 이 가문은 갑자사화 때 성종의 후궁인 엄귀인의 부친 등 3부자가 화를 입어 가세가 악화되었다.

북야공과는 시조가 영월에 정착한 후 下松里 일대, 杏亭을 중심으로 세거하다가¹⁴⁾, 13세 嚴岡壽가 중종 때 영춘으로 입향하여 영춘면 사이곡리 일대에 동족마을을 형성하였다.¹⁵⁾ 이들은 영춘 향약 때 모두 17명이 참여하였는데, 사이곡에서는 엄재룡(嚴在龍, 1775~1836)과 엄재형(嚴在炯)을 비롯하여 7명이었고, 만종리에서 3명, 어상천면 임현에서 4명 등이 참여하였다.

조선후기에 입향한 한양 조씨는 趙之壽가 시조인데, 위화도 회군 이후 공을 세워 크게 번성하여, 趙仁沃·趙溫·趙涓·趙英茂는 개국공신이 되었다. 이 가문은 계유정난으로 趙順生 등이 죽임을 당하였고, 조광조는 도학정치를 위한 개혁을 실시하다가 기묘사화로 사사되었다.¹⁶⁾

영춘에 입향한 계열은 조인벽의 아들인 趙師의 가천재공 계열이었다. 이들 선조는 김포와 시흥에 살다가 11세 趙世舟 때 제천 금성에 내려와 4대 정도 살았고, 숙종 때 15세 趙懋(1636~1686)가 덕천리에 입향하여 동족마을을 형성하였다.¹⁷⁾

22세 趙鍾文(1812~?)은 철종 12년(1681) 영춘에서 생원이 되었고, 趙炳文은 성균관 박사였다. 한양 조씨는 영춘 향약 실시 때 조종두(趙宗斗)와 조명혁(趙命赫) 등 9명이 참여하였다. 대한제국 때에는 상리의 12칸짜리 기와집에 살면서 5결 84부 9속을 소유한 趙鍾永을 비롯하여 모두 12명이 1결 이상을 소유하였고, 영춘향교의 직원 3명과 진교 4명을 배출하였다.¹⁸⁾

13) 이근호, 2006, 「16~18세기 단종복위운동 참여자의 복권과정 연구」 『사학연구』 83 ; 이현진, 2010, 「조선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장」 『사학연구』 98.

14) 영월읍씨중앙총친회, 1986, 『은행나무』 2.

15) 영월읍씨대동보소, 1996, 『영월읍씨대동보(병자보)』.

16) 조광조는 5세 趙仁璧-趙溫-趙育-趙衷孫-趙元綱-10세 조광조로 이어지는 계열이다.

17) 한양조씨가천재공과보소, 1979, 『한양조씨가천재공과보』 상·하.

18) 『靑襟錄』.

영춘에는 인조 대에 입향한 파평 윤씨도 있었다. 시조는 고려 개국공신 尹莘達이며, 5세 尹瓘이 문하시중이 되면서 가세가 번창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 14세 尹承順의 아들 尹坤이 소정공파와 尹承禮의 판도공파에서 많은 고관과 학자가 배출되었다. 판도공파는 다시 아들 대에 분파되어 15세 尹□의 정정공파에서 유명한 '대윤'과 '소윤'이 나왔다.¹⁹⁾

윤곤은 개국공신이 되어 많은 후손들이 배출하였고, 이 가문은 5명의 왕비를 배출하였다. 윤승례의 4남인 15세 윤번의 딸이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이다. 윤사흔의 증손자는 尹之任이고 윤지임의 아들이 尹元衡이며, 딸은 중종의 3비인 문정왕후이었다.²⁰⁾

파평 윤씨는 개성 일대에 살다가 윤관 때부터 파주와 장단에 거주하였고, 15세부터 24세까지 교화에 세거하였다. 문정왕후의 사후 사립파가 집권하면서 가세가 크게 몰락하였고, 인조 때 25세 尹彙義(1610~1672)가 처가가 있던 영춘에 입향하여 용진리에 동족마을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당시 영춘현감이었던 尹以宣의 지원으로 현종 14년(1673) 영춘면 하리(밤수동)에 松坡書院을 건립하여 尹宣學를 제향하였고, 후에 윤증이 사액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다.²¹⁾ 그리고 이 가문은 고종 31년(1894) 어상천면 심곡리에 尹行弼 효자각을 건립하였다.

한편, 창녕 조씨는 12세 조세기(曹世器)가 선조 후반 임진왜란을 피해 피난을 왔다가 이곳에 정착하여 영춘면 동대리에 동족마을을 형성하였다.²²⁾ 曹時榮(1654~?)은 현종 12년(1671) 효행으로 정려를 받았고, 영춘 향약 때 6명이 참여하였으며, 都正을 지낸 曹秉旭(1857~1934)은 1결 8부 7속을 소유하였다.

19) 파평윤씨대중회, 1983, 『파평윤씨세보』.

20) 세조비 정희왕후를 비롯하여 연산군의 생모인 성종의 1비 齊獻王后와 중종의 생모 貞顯王后 및 중종의 비 2명을 배출하였다.

21) 『審院錄』; 尹拯, 『明齋集』 권26, 答永春院儒. 송파서원의 토지는 고종 15년(1878) 현감 徐應亨이 빼앗아 세금을 징수하였다가 암행어사 李承臯에게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22) 창녕조씨경자세보편찬위원회, 1961, 『창녕조씨경자세보』.

삼척 김씨는 6세 金自柱까지 삼척에 살다가 15세 金元潤 이후 광주와 과천 등지에 거주하였고, 18세 金順生 때 안동에 내려와 증손자인 金震望까지 청송에 살았다. 그 후 22세 金斗山이 인조 때 병자호란을 피해 영춘에 입향하여 영춘면 의풍리에 동족마을을 이루었다.²³⁾ 이 가문의 인물은 영춘 향약 때 金錫老 등 모두 6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전주 이씨 광평대군과는 李汝標(1624~?)가 병자호란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모함을 받아 영춘에 들어왔다고 한다.²⁴⁾ 영춘 향약 때 이씨는 李陽貞 등 모두 16명이 참여하였고, 대한제국 때 李斗夏는 4칸짜리 기와집과 3칸짜리 초가에 살면서 4결 82부를 소유하는 등 16명이 1결 이상을 소유하였다.

이들 성씨는 영춘에 입향하여 혼인 관계를 맺고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추면서 지역 사회의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활동하였다. 당시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관직 활동과 사마시와 문과 급제자 현황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단양에서 생원과 진사를 배출한 성씨는 27개이며, 모두 45명이 입격하였다. 단양은 40명이었고, 영춘은 5명이었다. 전주 이씨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북 오씨가 5명이었으며, 창녕 성씨와 충주 지씨가 각각 3명이었고, 안동 김씨와 단양 우씨가 각각 2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1명이었다.²⁵⁾ 영춘에서는 朴權·張東武·趙鍾文·禹應龍·元容大가 입격하였다.

사족들은 지역사회에서 지배세력으로 위치하며 향권을 장악하였고, 서원을 건립하여 학문적 스승이나 가문의 현달한 인물을 제향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였다.²⁶⁾ 조선후기 영춘에도 영춘향교의 운영과 함께 새로운 서원과 사우를 건립하였다.

松坡書院은 현종 14년(1673) 영춘면 하리 밤수동에 건립되어

23) 삼척김씨세보간행위원회, 1991, 『삼척김씨세보』.

24) 전주이씨광평대군파중회, 1977, 『전주이씨광평대군파세보』.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CD-ROM 司馬榜目』.

26) 정만조, 1998,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 이해준, 2008, 『조선후기 문중 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尹宣舉(1610~1669)를 제향하였다. 이 서원은 파평 윤씨의 문중 사우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이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기능하다가 고종 때 훼손되었다.²⁷⁾ 그리고 琴谷書院은 영춘면 별방리에 건립되어 문장가로 이름난 李植(1584~1647)을 제향한 서원이다. 이 외에도 이 지역의 사족들은 북벽을 찾거나 四宜樓를 비롯한 수많은 정자에 모여 서로 교류하며 시를 짓는 등 활발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였을 것이다.²⁸⁾

그리고 영춘 사족들은 순조 25년(1825)에 향약을 실시하여 지역에서 향촌민을 통제하고 향권을 주도해 나갔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당시 영춘 향약은 양천 허씨와 강릉 유씨의 인물들이 주도하여 지역민을 통제하고 교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한말에도 이 지역의 사족들은 혼란한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고 향촌의 지배질서를 유지하면서 향촌민을 교화하기 위해 향약을 실시하였다.

1904년 말부터 제전을 중심으로 斥邪의 성격의 향약운동이 전개되었다.²⁹⁾ 柳麟錫은 일진회가 날뛰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였고, 그의 문도와 동지들을 중심으로 제천·충주·청풍·단양 등에서 의병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이 향약을 실시하였다.

영춘에서도 1905년 金昊淵이 도약정이 되고, 李會升이 도유사를 맡았으며, 鄭雲慶이 장의를 맡아 향약을 실시함으로써 무너지는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였다.³⁰⁾

27) 『列邑院宇事蹟』 충청도2, 영춘 송파서원 ; 『審院錄』. 이 책에는 현종 14년(1673)부터 철종 10년(1859)까지 서원을 방문한 인사들의 이력과 방문 날자가 기록되어 있다. 윤증의 아들인 尹行教는 숙종 21년(1695)에 방문하였고, 尹東洙는 경종 4년(1724) 단양군수 때 배알하였으며, 尹東暹은 영조 38년(1762) 충청도순찰사 때 방문하였고, 尹東昇은 영조 40년(1764) 충청도관찰사 때 배알하였다.

28) (사)단양향토문화연구회, 2010, 『丹陽樓亭錄』.

29) 최재우, 1989, 「한말 제천지방 향약의 위정척사적 성격」 『충북사학』 2,

30) 鄭雲慶, 『松雲集』 권5, 행장 ; 구완희, 2005, 「한말의 의병장 정운경의 생

Ⅲ. 조선 후기 향약 실시의 배경과 성격

1. 조선시대 향약 실시의 배경

향약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에 성리학의 도입과 함께 주희에 의하여 增損된 朱子增損 呂氏鄉約이 도입되었다. 주자증손여씨향약은 앞선 여씨향약에 비해서 이른바 향약의 4대 조목인 德業相勸·過失相規·禮俗相交·患難相恤 가운데 특히 예속상교의 내용이 보강되었는데, 이는 주자가 여씨향약에 대신해 새로운 향약을 만든 의도와도 관련된다.

주자는 여씨향약을 증손하면서 儀式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고, 그때 주목되는 것이 月旦集會讀約 규정이다. 월단집회독약이란 매월 초하루에 향약의 구성원들이 향교나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향약을 읽고 풀이하며 질문하는 의식이다. 이때 鄉射禮가 부대행사로 함께 시행되었다.

주자가 향약에 월단집회독약의 의식을 규정한 것은 향약을 강력한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향약이 사회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임을 가져야 하고, 모임 때는 엄격한 의식과 규제로써 향촌사회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향약을 실시하여 상부상조의 미덕을 보급시키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강력한 사회규범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이다.³¹⁾

조선시대 향약이 크게 주목된 것은 16세기 중반 趙光祖를 비롯한 사림파들이 실시한 향약 보급운동이 주요 계기가 되었다.³²⁾ 사림파들의

에」, 『조선사연구』 14.

31) 이성무, 1991, 「呂氏鄉約과 朱子增損呂氏鄉約」, 『진단학보』 71·72.

32) 사림파들의 향약보급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이태진, 1983, 「士林派의 鄉約普及運動-16세기의 經濟變動과 관련하여」, 『한국문화』 4,

향약 보급운동은 향약을 실시하여 재지사족들이 주도하는 향촌사회의 지배질서를 구축하고, 향약의 틀 속에 하층민들을 묶어두려는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였다. 사림파들의 이러한 시도는 초기에는 실패하였는데, 그 원인은 조선 향촌사회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위로부터의 교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사림파들의 향약 보급운동은 중종 14년(1519)己卯土禍로 일단 좌절되었으나, 사림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선조 대에 와서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자연촌, 즉 里를 단위로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황과 이이 등에 의해 조선의 실정에 맞는 향약이 마련되어 주목된다. 예를 들어 이이는 자신이 청주목사로 부임하면서 面里 조직을 고려한 西原鄉約을 제정하였는데, 이 서원향약은 앞서 언급한 주자준은 여씨향약과 체제나 내용이 전혀 다른 조선적인 향약이었다. 우선 주자의 향약이 여씨향약의 4대 조목을 기본으로 구성된 것과는 달리 서원향약은 4대 조목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내용상으로도 예속상교 내용은 결여되었다.

서원향약은 면 단위로 조직되었으며, 각 면마다 契長과 有司를 두었다. 이들 외에 約中의 士類 3인 이상이 회합하여 개최하는 사류회의가 있었다. 향약 내의 전반적인 업무는 계장과 유사와 사류회의를 중심으로 처결하도록 하였다. 都契長은 方位面 단위로 동·서·남·북 각 1인씩 모두 4인을 두었는데, 계장에 대한 감찰 기능과 관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계장은 4명씩마다 열리는 講信會를 주관하면서 約法을 讀訟하도록 하였고, 善籍과 惡籍에 대한 논벌이나 포상을 주관할 뿐 아니라 면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쟁송에 대해 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가졌다. 나아가 유사 등과 함께 약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서원향약의 내용은 재지사족들이 지역 내 지배권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질서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겠다.³³⁾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사족세력은 하층민들을 통제하고 사족 중심의 신분질서를 강화할 목적에서 양반 신분의 上契와 상민 신분의 下契를 합친 형태의 洞約 내지 洞契를 만들었다. 동계는 한 동 구성원의 계약에 의한 조직을 말한다. 동계는 15세기 후반 이후 사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다. 물론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실시 시기나 성격이 차이가 있어 17세기 초에 성립된 지역이 있는 반면에,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상계와 하계가 성립된 경우도 있다.

재지사족이 중심이 된 동계는 상하의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부역체계를 조정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 조선전기 이래 농업생산력이 발전되고 있었지만 소농경제는 거의 항상적으로 밖으로부터 각종 위협에 직면하였다. 흉수나 가뭄, 전염병 등이나 각종 질병 등이 그것이고, 그밖에도 각종 상장례나 혼인 문제는 토착해서 살아가고 있던 농민들에게는 자력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것들이었다. 그 위에 지주제의 전개에 따른 토지 소유 및 지대의 문제, 그리고 각종 부역의 부담 등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농민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특히 이 문제는 당시 농민들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더욱 곤란한 것이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일차적으로 농민들의 생사와 직결되는 것이지만 향촌 사회의 지배층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들의 안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재지사족들은 여씨향약의 이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동의 실정에 맞게 각종 규약을 정하였다. 그 규약은 바로 이상의 문제 해결을 그 중심 내용의 하나로 정하였다. 동계에서는 社倉 등으로 契物을 새로이 마련하거나 유사시 현물 부조, 노동력 제공 등에 관한 규약을 두었다. 또한 강신회

33) 김무진, 1983, 「울곡 향약의 사회적 성격」, 『학림』 5 ; 한상권, 1984, 「16·17세기 鄉約의 機構와 性格」, 『진단학보』 58, 38~41쪽. 충북에서 가장 먼저 실시된 향약은 중종 14년 李延慶이 충주에서 실시한 것이었고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7월 정사), 청주에서는 명종 18년 청주목사 이증영이 향약을 실시하였다(김의환, 2005, 「慕溪 趙綱의 향촌사회 활동과 청주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32).

등과 같은 모임으로 향촌민들을 통제하였다.³⁴⁾

17세기 후반부터 儒·鄕이 나누어져 사족의 영향력이 약화된 반면에, 면리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守令權이 강화되어 지방관이 향약을 주도하여 확산시켜 나갔다. 면을 단위로 하여 기존의 동계·촌계를 하부 단위로 편입시켜 신분에 관계없이 지역 주민 전부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후반 이후 조선 사회에서 진행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각종 부세 체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민의 토지 이탈이 증가하고, 더하여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사회체제를 동요시켰다. 이런 상황은 一鄕의 교화를 사족이나 향족에게 자치적으로 맡길 수 없게 되었고, 수령이 직접 나서서 관의 주도로 향약을 실시하게 되었다.³⁵⁾

이러한 주현향약의 출현 속에서 사족들 중심으로 운영되던 鄕案이나 鄕規의 모습도 달라져,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향안에 入錄되는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종래의 신분적 폐쇄성이 약화되고 서얼 등 그 동안 향안에 들어갈 수 없던 신분층이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향안의 작성이 중단되거나 파괴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전라도 남원의 향안 작성 과정을 추적한 한 연구에 따르면, 남원에서는 1700년 향안을 마지막으로 향안 작성이 끝나게 되었는데, 이는 유·향이 분기된 상황에서 더 이상 향임의 명단인 鄕籍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사족은 사족들만의 명단인 <直月案>을 만들어 사족과 향족을 엄격하게 구별하게 되었고, 향족들은 <座首案>으로 그들의 향권 내에

34) 김인걸, 1984, 「조선후기 鄕村社會統制策의 위기-洞契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58 ; 이해준, 1990, 「朝鮮後期 洞契·洞約과 村落共同體組織의 성격」,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35) 18세기 이후 지방관 주도의 향약은 주현향약이라 통칭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이 참고된다. 김용덕, 1990, 「鄕約新論」,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 박경하, 1990, 「18세기 州縣鄕約의 성격」, 같은 책 ; 정진영, 1990, 「18·19세기 士族의 村落지배와 그 해체과정」, 같은 책.

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향안으로 공통성을 유지했던 이들이 명확하게 갈라서게 되었다.³⁶⁾ 이는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나타난 변화였다.

18세기 중엽 이후 재지사족을 매개로 하던 기존의 수취체제가 수령에 의한 향약의 하부구조로서 共同納 체계 속에 포함되면서 그 성격이 변모되어 갔고, 동계 운영에서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하층민의 요구와 입장이 첨예하게 표출되었다. 즉 공동납의 실시는 다소 불합리한 가운데에서도 과거의 전통적인 촌락 기반 위에 온존될 수 있던 촌락간의 유대를 기본적으로 변모시키는 계기로 작용되었다.

상하민간의 洞役 부담이나 동계 조직 속에서 수렴되었던 여러 개의 경제 배경이 다른 촌락 간의 이해관계, 공동 납세액의 조정과 부담의 문제점 등 그동안 잠재되었던 갈등과 모순들이 이를 통해 구체화된 사안으로 현실화되었다. 동리 재정의 운영과 직결된 殖利 補用 등 새로운 동계의 목적이 부과되면서 계층 사이의 갈등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³⁷⁾

2. 영춘 향약의 내용과 성격

영춘 향약은 순조 25년(1825) 『鄉約儒籍』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것이다. 영춘 지역에서 언제 처음 향약이 시행된 지 알 수가 없다. 지금 현재로서 앞서 시행된 향약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조선의 향약이 사족 사회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던 지역에서 일찍부터 시행된 사실을 염두해 둔다면, 영춘 지역은 사족 사회의 형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늦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해본다.³⁸⁾

36) 김현영, 1991, 「17세기 후반 남원향안의 작성과 罷置」, 『한국사론』 21.

37) 이해준, 1990, 「朝鮮後期 洞契·洞約과 村落共同體組織의 성격」,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38) 이런 표현이 영춘 지역에 사족 집단이 이 시기에 이르러 형성되었다는

영춘 향약을 주도한 인물은 齋長 許菜老, 都有司 許堯一, 掌議 劉宅周), 座首 劉命應, 別監 許允一 등이었다. 당시 영춘 지역의 대표적인 성씨인 양천 허씨와 강릉 유씨가 이를 주도하였다.³⁹⁾ 이들 두 가문은 대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중반 경에 영춘에 입향한 가문들이다. 양천 허씨가 영춘에 입향한 것은 16세기 중반 경이며, 공조참판을 역임한 許天迪이 단양 양씨와 혼인하고, 그 아들이 단양 우씨와 혼인하면서 입향하였다. 강릉 유씨는 15세기 후반 세조 연간에 무과에 급제한 수군첨절제사를 역임한 劉仁夫가 강원도 삼척에서 입향하였다.

『향약유적』은 <鄉約通文> · <約條> · <鄉約儒籍序> · <鄉約先生座目> · <鄉約有司座目> · <鄉約儒生座目> · <鄉約講會通文> · <講規> · <跋>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허채노 등은 왜 이 시기에 향약을 제정한 것일까?

그것은 일단 풍속의 쇠퇴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었다. 허채노 등에 따르면, 영춘은 본래 궁벽한 읍이었지만 산수가 빼어나고 인물 또한 정기가 맑고 수려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열 집에 忠信이 없고, 백 년 동안 善士가 없으며,⁴⁰⁾ 400여 년 동안 문장에 뛰어난 인물이나 大儒를 배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다 향약이 제정될 당시 영춘 지역의 향촌민들의 습속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지나치게 이익과 욕심을 추구하고 천박하고 경솔함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향중의 자제들이 문학을 포기하고 혹은 잡기에 골몰하였다. 집에 약간의 재산이라도 있으면 사치의 풍습이 의관에 넘치고 잡기나 술을 즐기는 자를 호걸이라 불렀으며, 耕織과 농업을 비루하게 본다고 하였다.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족들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이들에 의한 향촌사회 지배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늦었다는 것이다.

39) 1895년에 편찬된 『永春郡邑誌』(奎10746)와 1899년에 편찬된 『永春邑誌』(奎10763)의 성씨조에 등재된 성씨는 모두 趙·尹·鄭·許·劉·李 등이다. 읍지 자료는 『忠淸道邑誌』(규장각자료총서)를 참고하였다.

40) 『鄉約儒籍』 <鄉約通文>.

심지어는 부모를 돌보지 않고 처자를 공홀히 여기지 않았으며, 대대로 내려오던 祖業을 탕진하여 遊離하는 데도 후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향촌이 ‘금수의 지경’으로 오염되었다고 한탄하였으며, 문란했던 甘陵⁴¹⁾이나 互鄉⁴²⁾보다도 못한 것이 당시 영춘의 실정이었다.

결국 허채노 등이 이 시기에 향약을 제정한 것은 쇠퇴한 풍속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다만, 허채노 등이 지적한 풍속의 쇠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표현이기도 하다. 영춘 향약이 제정되던 19세기 전반 조선 사회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기존의 신분 질서가 동요하는 가운데 당시 향촌민들은 부세 부담의 불균형 등으로 농촌의 이탈 현상이 가중되던 시기였다.

영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흥낙안은 상소에서 당시 영춘 지역 민들이 느끼는 민폐로 田稅를 운반하기 위한 선박의 제작과 운송 등을 비롯해 부세 부담이 문제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이탈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⁴³⁾ 이러한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는 재지사족들은 향촌민들의 교화를 명분을 내세우며 향약을 제정한 것이었다.

그런 중에도 별도로 ‘儒籍’을 제정하고 있음은 주목된다. 영춘 향약에 부수적으로 제정된 유적은 이전 시기 다른 지역에 시행되었던 향안과 같은 유형의 것이다. 향안은 향안·향적·좌목·유향좌목·鄉彥錄 등으로 불리던 조선시대 지역 지배사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안에 수록되는 것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있었다. 향촌사회에서 세족을 변별하는 것이 향안의 기능이기 때문에 본임의 학적이나 관작에 관계없이 부·모·처 3鄉이 해당 지역의 향안에 수록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일차적인 기준이었다.

41) 후한 때 있었던 黨錮의禍와 관련된 지역이다.

42) 호향은 중국 춘추 시대 풍기가 문란하고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로 사람들은 이 지역 출신들과 만나기를 꺼리었다고 한다.

43) 『承政院日記』 제1831책, 순조 즉위년 12월 15일(계해).

향안은 지방에서의 세족을 변별하여 향촌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후기로 갈수록 재지사족이 관직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안은 세족을 구별해주는 명부의 구실을 하였다. 따라서 허채노 등이 영춘 향약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유적을 같이 만든 것은 재지 사족을 중심으로 향촌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허채노 등이 쇠퇴한 풍속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彝倫을 講明하거나 勸善, 즉 선을 권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권선을 위해서는 立敎, 즉 사람을 가르치는 법을 세워야 하고, 입교를 위해서는 학문의 연마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결국 향촌민의 풍속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공을 쌓아야만 한다는 논리였다. 이를 위해서 영춘 향약을 제정한 허채노 등은 향교를 활용하였다.

조선시대 영춘 지역의 교육 시설은 松坡書院과 琴谷書院이 있었고, 영춘향교도 있었다. 이들 서원이 얼마나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영춘향교는 정종 1년(1399) 건립되어 광해군 6년(1614)에 남천리로 이건되었다. 당시 수령이던 申得滋는 향교가 ‘현의 북쪽에 있어 땅이 구석지고 경사가 심하며 규모가 누추하고 풀이 나서 폐허’가 되었다고 하여 이건을 계획하고, 이를 향촌 사람인 朴鵬壽 등에 위임하여 일을 주관하도록 하였다.⁴⁴⁾ 그 후 빈번한 화재로 현종 10년(1659) 현감 박종우의 주도로 늘대로 이건하였고, 정조 15년(1791)에 다시 상리로 이건되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중수되었다.

<표 2> 영춘향교 중수 연표

시 기	관련기록 및 주도 인물
-----	--------------

44) 李垞, 『蒼石集』, 권13, 記, <永春鄉校重修記>.

	문서명	작성자 및 주도 인물
1811년 ⁴⁵⁾	鄕校重修記	임연호(현감) · 허형동(전도유사) 허계하(시장의)
1859년	鄕校重修文	김재성(영춘현감) · 허록(도유사) 허진하(시도유사) · 유석풍(장의) 정의봉(감역유사)
1862년	西齋慕賢記	이영식(계장의) · 윤이형(강재임) 김창백(별유사) · 임익부(별유사) 허진하(설계첨원명첩), 유만순(좌수) · 조태운(좌수), 조양승(좌수)
1868년	永春縣學重修記	허록(도유사) · 허만(장의) · 허송(도감)
1891년	鄕校重修記	유관순(도유사) · 이민규(현감) 박종현(도유사) · 엄성록(도감) 유성렬(장의) · 정학연(장의)
1898년	鄕校祭享費更修整節目序	허전(도유사) · 조국원(장의) 엄화섭(장의) · 김희식(색장) 박해린(색장)
	享祀節目序	최문환(현감)
1925년	鄕校重修記	조종극(전직원) · 조병추(직원) 조중숙(도유사 겸 도감) · 엄성현(장의) · 천장환(장의) 유재현(장의) · 윤석하(감역)
1934년	供士田購入記	천장환(직원) · 박래익(도유사) 조낙원(장의) · 허영(장의) 이관성(장의) · 박기원(장의) 등
1966년	三門重建記	김연해 · 나승원(전교) 조규현(감역) 등

1971년	明倫堂重修記	유재인(전교)·조석동(유도회 지부장)·조규수(유유사)·박노원(유사)
1978년	鄉校重修記	김중혁(전교)·엄재성(도유사)·나한주(유도회 지부장)·고삼규(장의)·윤철수(장의)
기축년	西齋彰功記	이영식(재임)·윤상형(강재임)·조봉운(강재임)·윤성해(계장의)·신명수(별유사)

위의 <표 2>에서 주목되는 것은 1891년 중수 때까지는 특정 성씨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811년에는 허영동과 허계하 등 양천 허씨, 1859년에는 허륵과 허진하 등 역시 양천 허씨, 1868년에도 허륵·허만·허송 등 양천 허씨 등이 주로 확인되고 있다. 양천 허씨는 강릉 유씨와 함께 영춘 향약의 실시도 주도하였다. 그리하여 齋長 許萊老, 도유사 許堯一 및 향청의 별감 許允一 등과 함께 허유조가 都約正, 허요일이 副正을 맡았다.

강릉 유씨의 경우 1859년에 장의 유석풍과 1862년에 좌수 유만순, 1891년에 도유사 유관순과 장의 유성렬 등이 향교의 중수를 주도하였다. 이들 역시 향약 실시도 주도하여, 장의 劉宅周와 향청의 좌수 劉命應 등이 참여하여, 유명응은 부정의 직임을 맡았고, 유택주와 劉震衡은 유사로 활동하였다. 다만, 1891년 이후에는 향교의 중수가 특정 성씨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한 영춘의 성씨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통문>에서 허채노 등은 향교는 首善之地이고, 또한 인재를 육성하

45) 신미년에 작성된 <鄉校重修記>의 찬자는 현감 林淵浩이며, 임연호는 순조 7년(1807) 영춘현감에 재수된 뒤 순종 11년(1811) 12월까지 영춘현감에 재직했던 인물이다.

는 곳이므로 斯文이 아니면 가까이 할 수 없고, 유생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으며, 비록 儒鄉甲族이라도 혹은 彝倫에 어둡고 이단에 오염되어 있으면 청금의 반열을 쳐다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 같은 표현은 향교에서 학문을 진작함과 동시에 향교를 통해 자신들의 신분적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허채노 등은 봄 석진제를 기해 중국의 여씨향약 가운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조목의 일부를 취하여 여러 선비들과 논의를 거쳐 약조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향교의 儒籍에 기록하여 영구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였다.

영춘의 향약은 모두 12개조 구성되었는데, 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四勿로 주색을 탐하지 말고, 잡기를 좋아하지 말 것이며, 문학을 게을리 하지 말고, 농사에서 때를 놓치지 말라.
- ② 四必로 친척과 반드시 화목하고, 이웃과 반드시 화합하며, 언어는 반드시 신중하고, 종유하는 자는 반드시 잘 택하라.
- ③ 四畏로 천명을 두려워하고, 법령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 기한을 두려워해야 하라.
- ④ 四戒로 이익과 욕심을 경계하고, 싸움을 경계하며, 사치를 경계하고 허망한 것을 경계하라.
- ⑤ 삼강오륜의 조목은 두꺼운 종이를 쓰거나 혹은 나무 껍에 기록하여 차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좌우에 붙여서 놓거나 일어날 때마다 보고 출입할 때마다 암송하게 하면 마음에 적셔 들어 하루아침에 깨달음이 막힘없는 경지에 이르러 스스로 깨닫지는 못하지만 갑자기 효제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라.
- ⑥ 소학이나 대학, 향약, 향례 등의 책은 절목이 대단히 상세하지만 헛되이 독서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 하물며 처음 시작하는 초반에 갑자기 이를 시행하면 반드시 막히는 데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근심이 있을 것이다. 조금 약

조가 이루어진 것을 기다린 뒤에 시행하라.

⑦ 향약을 함께 하는 사람의 名牒을 거두어 좌목에 기록한 뒤에 “鄉約 儒籍”이라 명명한 뒤에 향교에 보관하고, 2월과 8월의 석전제 전에 회강한 뒤에 태도와 행실이 뛰어나 포상할 만한 자 [操行之可褒者], 문필이 진취한 자 [文筆之進就者] 는 그 사실을 善籍에 기록하여 선양한다. 포창할 것이 없는 자는 각기 스스로 허물을 말하도록 해 이를 喜聞錄에 기록하는데, 이는 반드시 강박할 필요는 없이, 一鄉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과실을 수궁하여 스스로 말하지 않는 자는 별로 논하고, 스스로 과실을 말한 자는 허물을 고치는 것에 상응하고, 허물이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자는 3번을 꾸짖되, 고치지 못하면 장차 黜約하라.

⑧ 석전제 때 헌관은 나이가 많고 덕이 있으며 지식이 뛰어난 자 [有齒德知識者] 를 청해 일을 진행하되 문필을 고시하여 善否를 들추어 늘어 놓도록 하며, 諸執事는 향약 내 유생으로 재주와 품격에 따라 자리를 채우는데, 향약 밖의 유생은 異論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임과 집사를 분정할 때 천망하지 말라.

⑨ 우리나라의 법례에 이미 문벌을 쓰므로 혼동해서 겹겹이 가리어 막는 것이 없을 수 없으니, 原鄉故家子孫 가운데 문필에 능하고 태도와 행실이 뛰어난 등 허물이 없어 약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는 儒錄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하되, 新進·閑散·疏通·非生進 자는 유록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마다 성과를 이룬 뒤에는 몸가짐이나 행동, 일을 처리하는 것 등을 살펴 본 뒤에 비로소 유록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하라.

⑩ 도유사와 장의는 儒錄에 참여하지 않으면 천망하지 않으며, 색장 및 제집사는 신진·소통 중의 사람으로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차임하는 것은 구애되지 않는다. 매년 봄 2월 석전제 때 천망을 위한 정식을 제정한다. 만약 향약 밖의 사람이라도 허물을 고쳐 스스로 일신해서 향약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거부하지 말라.

⑪ 鄉約正은 鄉公員이 겸대하고, 향약 부정은 도유사가 겸관하며, 直月은 장의가 겸행한다. 그리고 각 면에 또한 유사 1원을 정해 제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으거나 설행한다. 그런데 향약이 수 차례 모이다보면 폐단이 있을 수 있으니 각 면의 서속을 처소로 정하고, 강론 등과 같은 행사는 도약정에 아뢰어 편한데로 행하게 한다. 명첩은 면의 유사가 일제히 모아 향교로 보내는데, 이름 아래에 반드시 着啣하라.

⑫ 寓班과 土班 가운데 地望이 있거나 태도와 행실이 뛰어나지만 獨善之計를 하고자 해서 향약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에는 사론이 귀일된 후에 향선생으로서 유적의 우두머리에 올린다. 그리고 봄 가을에 모일 때 의관을 정제한 뒤 청하여 향약 예절의 당부를 질문함으로써 矜式으로 삼도록 하라.

위의 약조 가운데 ①~⑥조까지는 향약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약조를 규정한 것이며, 삼강오륜과 같은 윤리의 재확립을 위한 조항들이라 하겠다. ①~④조는 향촌민이 지켜야 할 16개의 약조를 제시한 것이며, 향촌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조목이었다.

이들 조항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⑥조이다. 성리학적 사회질서의 기본이 되는 소학이나 대학 등은 일단 뒤로 미루고, 앞서 실천하기 용이한 약조가 정착된 후 이를 시행하자고 하였다. 이들이 제정한 약조는 남전 여씨향약을 그대로 준수하기 보다는 단지 일상에서 쉽게 행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조항들이다. 이들은 ‘향약이라고 하기 보다는 항상 해야 하는 일’⁴⁶⁾ 정도로 인식하였다.

다음 ⑦~⑫조는 향약의 구성원이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먼저 주목되는 것은 향촌 운영을 사족들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별도로 『鄉約儒籍』을 만들어 향교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향약유적에 등재된 사족들을 중심으로 석전제가 있는 2월과 8월을 기해 회강한 뒤 문필이나 행실이 뛰어난 자는 善籍에, 그렇지 않고 허물이 있는 자는 喜聞錄에 기록해서 경계로 삼도록 하였다. 회문록에 등재된 자 가운데 3번의 기회를 주어서 만약

46) 『鄉約儒籍』 <鄉約講會通文>.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출향하도록 하는 제재 수단도 강구하였다.

한편 강회를 위해서는 별도의 회강 규칙을 제정하였다.⁴⁷⁾

① 제술은 詩賦 行文 가운데 장기 각 1편을 지어 제출하고, 제술에 능하지 못한 자는 사서삼경 중 자기가 읽기를 원하는 책 중 1장 중 추첨하여 面講하고, 筆才는 壯紙 1장을 써서 제출한다.

② 노소 가운데 유고가 있어 참석하지 못하면 앞서 제시한 향약의 16조항 중 자신에게 강점이 있는 조목을 자기 이름 아래에 주를 달아 단자를 보내면 儒籍에 기록한다.

③ 부친이 향약 내에 들어와 있어 아들이 문학이 있으나 고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하고, 나이가 비록 어려지만 能文能筆한데 동몽이라고 하여 불참하는 것은 불가하니 해당 면의 유사가 하나같이 통지하여 함께 혜택을 주어 向隅之歎이 없게 하며, 향약에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으나 입적하지 못한 자는 또한 거부하지 않는다.

④ 다음 달 보름에 강회를 하되 아침 일찍 先師를 배알하고 마당에서 읍례를 행한 뒤에 과시를 설행하되 각자가 巾服·紙筆·冊子를 가지고 기한 전에 와서 모이도록 해서 때에 임하여 태도를 잃지 않도록 한다.

이처럼 향약을 시행하면서 별도로 강회규칙을 제정하는 등 강회를 강화한 것은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것이다. 앞서 주자가 여씨향약을 증손한 주지중손 여씨향약을 제정하면서 월단집회독약 의식을 강화한 것이라든지, 이이가 서원향약을 시행하면서 역시 강신회를 강조한 것은 향촌민에 대한 향약의 강제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춘향약에서 역시 <講規>와 같은 조문을 포함해서 강회를 강화한 것 역시 이런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즉 향촌민의 교화를 위해 제정한 향약을 향촌민들에게 강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족들 중심으로 운영하되, 新

47) 『鄉約儒籍』 <講規>.

進·閑散·疏通·非生進 등은 3년마다 고과하여 유적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한 규정이다. 향약의 이같은 규정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 조선시대 향약의 흐름을 보면 대개 17세기 후반 이후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향입층이 성장하면서 기존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鄉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향전의 발생으로 인한 향촌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다.⁴⁸⁾

그러나 영춘 향약의 경우는 앞서 시기에 향약이 제정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으나, 1825년에 제정된 향약에서 여전히 사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한산이나 소통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혹시 이 지역의 사족사회 형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⁴⁹⁾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향약을 향교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점이다. 조선에서 향약의 시행을 학교와 연계한 전통은 이미 율곡의 서원향약에서부터 추진되던 방식이었다.

영춘 향약에서도 위에서 제시한 조항 가운데 ⑪번 조항에 鄉約正은 鄉公員이 겸대하고, 향약 副正은 도유사가 겸관하며, 直月은 장의가 겸행한다고 규정하였다. 향교 조직과 향약 조직을 연계한 것이다. 아울러 유적을 향교에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각 면의 유사가 일제히 각 면의 명첩을 모아 향교에 보내도록 한 것이었다.

사실 조선에서 향교는 15세기 후반 이후 교육적인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까지 계속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대성전에 공자를 모시고 봄과 가을로 진행했던 석전제와 같은 제향 기

48) 단양지역의 사족 동향과 향전의 양상은 다음을 참고할 것. 조준호, 2010, 「조선시대 단양지역 사족의 동향」 『중원문화논총』 13.

49)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앞서 언급한 서원에서 보듯이 서원을 설립하게 된 것이 명확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은 이 지역 사족 사회의 성립이 늦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능이 지속되었다는 점과 함께 향촌 사족들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었다.⁵⁰⁾

그렇다면 이 시기 영춘 지역에서 향약 운영을 주도하던 사족들의 구성은 어떠했을까? 이는 향약에 부속된 선생좌목이나 유생좌목 등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향약유적』에 등재된 인원은 모두 223명이었다. 차의곡면의 인물이 가장 많은 79명으로 나타나고, 현내면이 가장 적은 10명으로 확인된다. 인원수가 많은 순서는 차의곡면, 가야면, 어상천면, 동면, 대곡면, 현내면 순이다.

다음으로 이를 성씨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향약유적의 지역별·성씨별 인원수

	東面	縣內面	大谷面	佳野面	魚上 川面	車衣 谷面	계
許	14	5	3	17	17	19	75
劉		2		8	3	34	47
嚴			1	1	3	12	17
李		1	4	11			16
張				1	11		12
金	6	1		1		1	9
趙	2			7			9
全					4	3	7
朴			2		1	3	6
曹	3					3	6
魏	4						4
丁						3	3

50) 윤희면, 1990, 『朝鮮後期 郷校研究』, 일조각 ; 정호훈, 2010, 「조선후기 향교 교육과 단양」 『중원문화논총』 13.

具				3			3
南				1	1		2
辛	2						2
邊				1			1
鄭		1					1
柳	1						1
智						1	1
高			1				1
계	32	10	11	51	40	79	223

가장 많은 인원수를 보이는 성씨는 허씨이며, 모두 75명이 참여하였다. 이어서 유씨가 47명을 차지하였다. 이들 두 성씨는 앞서 지적한 바와 19세기 이후 향교의 중수를 주도했던 양천 허씨와 강릉 유씨이다. 영춘 지역에서 차지하는 두 성씨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영월 엄씨가 그 뒤를 이어 17명이 참여하였고, 전주 이씨 16명, 인동 장씨 12명, 한양 조씨 9명, 창녕 조씨 6명 등이다. 당시 영춘 향약에 참여한 사족의 구성은 이 시기 이들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 후에도 영춘향교의 직원과 전교 및 임원 역시 이들 성씨에서 많이 배출되었음이 확인된다.⁵¹⁾

IV. 맺 는 말

이상에서 19세기 전반 영춘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향약에 대해서 살펴해보았다. 이에 따르면 향약 실시를 주도했던 허채노 등이 이 시기에 향약을 실시한 것은 쇠퇴한 풍속이 문제였다. 다만 이들이 표현한 쇠

51) 『靑襟錄』 및 각종 향교 중수기와 이건기 참조.

퇴한 풍속에는 부세의 불균등 등으로 인한 토지로부터의 농민의 이탈 등 당시 조선 사회의 변화가 내재해 있었다. 허채노 등은 향약을 실시하여 향촌 사회의 안정화를 의도하였다.

영춘 향약은 순조 25년(1825)에 실시되었는데, 이전의 향약 실시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다면, 영춘에서는 이 글에서 살펴본 향약이 최초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점은 영춘 지역 내에서 사족 사회의 형성이 다소 늦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보았다.

한편 향약의 구성원들은 당시 영춘 지역의 재지사족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양천 허씨와 강릉 유씨들이 주도하였다. 이는 1891년까지 이루어진 향교의 중수 과정에서 이를 주도했던 성씨들과 일치한다. 이들 허씨와 유씨 이외에도 영월 엄씨·전주 이씨·인동 장씨·한양 조씨 등 당시 영춘에 세거하던 사족 가문들이 대부분 참여하였다.

영춘 향약은 모두 12조항으로 이루어졌고, 부수적으로 강화를 위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영춘 향약은 기본적으로 사족들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신진이나 한산 및 비생진 등을 고과하여 儒籍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춘 향약은 향약의 실시를 향교와 연계하고 있는데, 향교의 소임을 맡은 사람들이 역시 향약의 소임을 담당하였고, 재지사족의 명부인 유적을 향교에 보관하도록 한 것도 그런 의도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겠다.

주제어 : 영춘 사족, 양천 허씨, 강릉 유씨, 영춘 향약, 영춘 향교

<Abstract>

The Current of Yeongchun Sajok and the Character of
Yeongchun Hyangyak

Kim, Eui-hwan · Lee, Geun-ho

Key words : Yeongchun Sajok, Yangcheon Heo Family,
Gangneung You Family, Yeongchun Hyangyak(永春郷約),
Yeongchun Hyanggyo(永春郷校).